

## 제 5 장

###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#### 제 5.1 조

##### 목적

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,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5.2 조

##### 적용범위

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.

#### 제 5.3 조

##### 일반규정

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.

#### 제 5.4 조

##### 위생 및 식물위생 접촉선

1. 무역 관련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상,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하기로 합의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- 나. 이스라엘의 경우, 경제산업부 대외무역청 또는 그 승계기관
2. 접촉선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  - 가.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,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
  - 나. 제 5.6 조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조정, 그리고
  - 다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의 촉진

### 제 5.5 조

####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이러한 목적상,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
  - 가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규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. 그리고
  - 나. 국제식품규격위원회,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「국제식물보호협약」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 체제하의 관련 국제 표준, 지침 및 권고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.
2. 양 당사국은 제안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.

3. 양 당사국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,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모든 중대하거나,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패턴의 불합치 및 수출 당사국이 취할 모든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4. 수입 당사국이 긴급조치를 부과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그 결정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한다. 그러한 통보의 수용에 따라, 수출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양 당사국은 합의하는 대로 논의를 개최한다.

## 제 5.6 조

###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2. 위원회는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, 위원회는
  - 가.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한다.
  - 나.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.
  - 다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.
  - 라.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.
  - 마.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, 국제식품규격위원회, 세계동물보건기구, 「국제식물보호협약」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,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

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한 문제,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논의한다.

바.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.

사. 제 5.5 조(협력)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력 활동을 조정한다. 그리고

아.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.

3.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.

4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위원회는 매년 1 회 회합한다. 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합할 수 있다.

5.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, 위원회에 의한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한다.

### 제 5.7 조 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협정에 따른 제 20 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않는다.

### 제 5.8 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가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 
1 가의 「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 그리고

나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에 포함된 정의가  
적용된다.

부속서 5-가  
권한 있는 당국

이) 장의 목적상,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

- 1)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, 또는 그 승계기관
- 2)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또는 그 승계기관
- 3)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- 4)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

나. 이스라엘의 경우,

- 1)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식물보호검사소 또는 그 승계기관
- 2)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수의동물보건소 또는 그 승계기관
- 3) 보건부 산하 국립식품소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- 4) 보건부 산하 의약품기준감독연구소 또는 그 승계기관